



미 국



## 미국 소규모기업을 위한 사베인 - 옥슬리 법 제404조 관련 규칙의 시행일 연기

정보신청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 I. 개요

2006년 12월 15일,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 라 한다)는 Release No. 33-8760을 통해 소규모기업과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사베인-옥슬리 법(이하 'SOX 법' 이라 한다)<sup>1)</sup> 제404조상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책임의 준수를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SEC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SOX 법 제404조의 준수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소규모기업에 대한 제404조 관련 의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기업에 대한 동 조항의 시행을 연기하였다.

### II. 배경

지난 2002년 제정된 SOX 법 제404조는 내부 회계통제<sup>2)</sup>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책임을 SEC가 규칙(SEC Rule)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sup>3)</sup> 제404조의 위임사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은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구조와 절차를 수립·유지하고 최근 회계년도 말일 현재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인증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2003년 6월 5일, SEC는 SOX 법 제404조의 위



- 1)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Pub. L. No. 107-204, 116 Stat. 745 (2002) (codified in scattered sections of 11, 15, 18, 28, and 29 U.S.C.).
- 2) "내부회계통제란 기업의 사기행위(fraud)를 제거하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Timothy L. Weston, Sarbanes-Oxley Section 404 under Siege: Solution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Implementing Section 404, 60 CONSUMER FIN. L.Q. REP. 86, 86 (2006),
- 3) 15 U.S.C.S. § 7262 (LexisNexis 2007).

임에 따라 재무보고의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평가보고서와 동 보고서에 대한 감사회계법인의 인증보고서(attestation report)를 연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규칙을 공포하였다.<sup>4)</sup> 2004년 6월 15일 0시 이후, 최초 회계연도 말일 현재 해당 주식발행인이 규칙 12b-2에 따른 조기제출기업(accelerated filer)<sup>5)</sup>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동 개정 규칙은 그 시행일을 달리한다.

즉, 조기제출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관련 규칙을 적용하며, 조기제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과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관련 규칙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

### III. SOX 법 제404조 관련 규칙의 시행일 변동 연혁

2004년 2월 24일, SEC는 Release No. 33-

8392를 통해 제404조 관련 규칙을 조기제출기업의 경우 2004년 11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非)조기제출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우 2005년 7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sup>6)</sup>

2005년 3월 2일, SEC는 Release No. 33-8545를 통해 비조기제출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제404조 관련 규칙의 시행을 2006년 7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로 연기하였다.<sup>7)</sup>

2005년 9월 22일, SEC는 Release No. 33-8618을 통해 비조기제출기업에 대한 제404조 관련 규칙의 시행을 2007년 7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로 연기하였다.<sup>8)</sup>

SEC 규칙 12b-2의 조기제출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외국기업은 비조기제출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2007년 7월 연기혜택을 받는다.<sup>9)</sup>

2006년 8월 9일, SEC는 Release No. 33-8730A를 통해 대형조기제출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up>10)</sup>이 아닌 조기제출기업으로서 Form 20-F<sup>11)</sup> 또는 Form 40-F<sup>12)</sup>의 형식으로 연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4) Management's Reports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Certification of Disclosure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33-8238, 2003 SEC LEXIS 1380 (June 5, 2003).

5) 조기제출기업은 회계연도 말일 현재 보통주의 시가 총액이 7천 5백만 달러 이상(7억 달러 미만)의 회사로서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기타 Rule 12b-2(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발행인을 의미한다. 17 C.F.R. § 240.12b-2(1) (2007).

6)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33-8392, 69 FR 9722 (Feb. 24, 2004).

7)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33-8545, 70 FR 11528 (March 2, 2005).

8)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33-8618, 70 FR 56825 (Sep. 22, 2005).

9) Id. at 56826.

10) 대형조기제출기업은 기준일 현재 보통주의 시가 총액이 7억 달러 이상의 회사로서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기타 Rule 12b-2(2)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발행인을 의미한다. 17 C.F.R. § 240.12b-2(2) (2007).

11) Form 20-F는 외국기업이 SEC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형식으로서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으로도 쓰인다. 17 C.F.R. § 249.220f (2007).

제404조 관련 규칙의 시행을 2007년 7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로 연기하였다.<sup>13)</sup>

#### IV. SEC Release No. 33-8760을 통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404조 시행일 연기

2006년 12월 15일, SEC는 Release No. 33-8760을 통해 소규모기업에 대해 SOX 법 제404조 관련 규칙의 시행을 추가 연기하였다.<sup>14)</sup> SEC Release No. 33-8760에 따르면, 비조기제출기업은 2007년 12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를 위한 연간 사업보고서의 제출시점부터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평가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는 2008년 12월 15일 0시 이후의 회계연도에 관한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SEC는 동 Release를 통해, 소규모기업에 대한 공개기업회계감사국(PCAOB)의 회계감사 기준 2호(Auditing Standard No. 2)<sup>15)</sup> 및 기타 관

련 지침을 개정하려 하기 때문에 비조기제출기업 등에 대한 제404조 관련 의무의 시행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SEC는 Release No. 33-8760에서 신규 공개기업에 전환기간(transaction period)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칙을 공포하였다. 동 Release를 통해 발표된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신규 공개기업은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서 제출기업이 된 후, 첫 번째 연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제404조상의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전환기간 혜택은 신규 공개기업이 1933년 증권법상의 기업공개와 동시에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서 제출기업이 되는 경우 제404조 상의 부담을 완화시켜 소규모 기업공개 위축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sup>16)</sup>

#### V. 결어

SOX 법 제404조는 제302조<sup>17)</sup>와 더불어 기업 공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 12) Form 40-F는 Form 20-F와 같은 성격을 띠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보고서의 형식으로서 캐나다 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된 것이다. 17 C.F.R. § 249.240f (2007).
- 13)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of Foreign Private Issuers That Are Accelerated Filers,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33-8730A, 2006 WL 2335560 (Aug. 9, 2006).
- 14)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Exchange Act Periodic Reports of Non-Accelerated Filers and Newly Public Company,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33-8760, 2006 SEC LEXIS 2922 (Dec. 15, 2006).
- 15) Auditing Standard No. 2는 SOX 법 제정 초기 제404조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회계감사기준이다. Auditing Standard No. 2,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34-49884, 69 FR 35083 (June 17, 2004).
- 16) SEC Further Postpones Date By Which Smaller Public Companies Must Comply With Internal Control Reporting Requirements Mandated by Section 404 of Sarbanes-Oxley Act of 2002, US Fed News, December 15, 2006, available at LexisNexis.
- 17) SOX 법 제302조는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업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CEO/CFO 등의 정기보고서 인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5 U.S.C.S. § 7241 (LexisNexis 2007).

서 해당 기업의 법 준수부담이 크다. 제404조에 대한 기업의 준수비용은 평균적으로 380만 달러로 추산되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준수비용이 증가한다.<sup>18)</sup>

학계나 재계 일부에서는 SOX 법 제404조가 공개기업의 법 준수비용을 과중하게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동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sup>19)</sup>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제404조의 일반적 효용성을 인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완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20)</sup>

현재 SEC는 SOX 법 제404조에 대한 소규모기업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한편으로 SEC는 소규모기업에 대한 제404조의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 의회에서도 소규모기업에 대한 제404조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up>22)</sup>

앞으로 SOX 법의 비용 - 편익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제404조의 소규모기업에 대한 규제는 추세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갑 래

(미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18) See Aaron Lorenzo, SEC signaling interest in scaling back SOX rules, Diagnostic Update, May 25, 2006, available at LexisNexis.
- 19) See Tosha Huffman, Section 404 of the Sarbanes-Oxley Act: Where the Knee Jerk Bruises Shareholders and Lifts the External Auditor, 43 BRANDEIS L.J. 239, 257 (2004).
- 20) See Sarbanes-Oxley Section 404: What is the Proper Balance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Capital Formation for Smaller Public Companies?, Hearing Before the H. Small Bus. Comm., 109th Cong. (2006), available at <http://www.sbsc.org/content/display.cfm?ID=1641>.
- 21) See SEC Says No SOX 404 Waiver for Small Companies; More SOX Guidance Is on the Way, Accounting Office Management & Administration Report, CPA Firm Management Vol. 2006 No. 7 (July, 2006), available at LexisNexis;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Smaller Public Companies to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ecurities Act Release No. Release No. 33-8666, 2006 WL 520112 (Feb. 28, 2006).
- 22) Senators Kerry and Snowe seek another year delay to absorb upcoming rules, Daily Deal/The Deal, Feb. 27, 2007, available at LexisNexis.